



붙임3.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운영시 준수사항



[가축분뇨법 제17조 관련]

1.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**운영시** 아래 각 호의 사항은 **반드시 금지**하여야 함.
 - 가. **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**하거나 **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**하는 행위
 - 나.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**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(중간배출)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**하는 행위 (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리 허가 받은 경우 제외)
 - 다. **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**하는 행위 또는 **물을 섞어 배출**하는 행위(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물을 섞어야만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)
 - 라.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**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·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**(환경부령에 따라 퇴비·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 제외)
 - 마.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**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**하는 행위
 - 바. **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**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**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** 행위
 - 사. **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**하는 행위

상기 금지행위 위반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허가 규모)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신고규모), 행정처분(경고 등)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2.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**운영자는** 아래 각 호의 **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**하여야 한다.
 - 가.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**처리시설을 항상 가동**할 것
 - 나. **뒤틀림 현상, 누수,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**하며,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**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**하거나 **보수**할 것
 - 다.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적절한 온도·습도·공기량을 유지**하여야 하며, **가축분뇨, 퇴비·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**할 것



붙임3.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운영시 준수사항



[가축분뇨법 제17조 관련]

- 라. 가축분뇨,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, 악취가 나가거나 쥐·모기·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마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,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,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,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,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
- 바. 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, 생산되는 퇴비·액비,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1)의 구분에 따른 자가 2)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
 - 1) 방류수수질기준: 한국환경공단, 축산환경관리원, 측정대행업자
 퇴비액비화기준: 한국환경공단, 축산환경관리원, 지방농촌진흥기관
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: 한국환경공단, 축산환경관리원
 - 2) 정화시설: 3개월(허가규모), 6개월(신고규모)
퇴비·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: 6개월(허가규모), 1년(신고규모)
- 사.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,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,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
- 아.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, 퇴비저장시설 내에 빛물·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자.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
- 차.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·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,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
 - 1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
 - 2)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
- 카.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.

상기 관리기준 위반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(개선명령 등)에 처할 수 있습니다.